

9.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년 4월 1일
- 발 의 자 : 김태원 의원, 김규학 의원, 박갑상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헌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정천락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4월 5일
- 상정일자 :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 4월 14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원 의원)

###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의무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 안 제3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 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지원 및 사무에 대한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4배 정도(일평균 23.8건 → 102건) 증가하는 등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297건에서 2017년 436건으로 3년 만에 1.5배 가량 눈에 띄게 증가한 이래,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 신고 건수 또한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시에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피해자 상담·의료 서비스 지원,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등 폭력 및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임.

- 스토킹범죄의 경우 범행 초기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음.
- 그동안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약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10.21.)을 통해 보다 무겁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럼에도 스토킹범죄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먼저 스토킹 의심 신고 접수 시부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찰청,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3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 분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의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지원 대책마련도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음.
- 끝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관심의 표출이 아닌 한 개인의 평온한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